

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83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0. 26.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세법」의 개정사항(2019.12.31. 일부개정, 2021.1.1. 시행)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(안 제9조)

나.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13조, 제15조, 제17조, 제19조, 제20조, 제22조)

- 1)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→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(과세목적에 맞게 명칭변경)
- 2)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→ 특정자원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(세분화)

현 행

세분류	과세대상	목적
특정 부동산분	건축물, 선박	① 소방재원 ② 자원보호·개발 ③ 환경개선 ④ 지역균형개발
	건축물·토지	
특정 자원분	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, 컨테이너, 원자력발전, 화력발전	

개 정

세분류	과세대상	목적
소방분	건축물, 선박	① 소방재원
<삭제>	※ 이중부담 우려 등 해소	
특정 자원분	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	② 지역자원 보호·보전 ③ 주민생활
특정 시설분	컨테이너, 원자력발전, 화력발전	환경 개선 ④ 지역개발

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 제44조 등 (붙임)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0. 9. 21. ~ 10. 12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아님

3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5) 갑질영향심사 : 개선의견 없음

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법 제40조에 따른”을 “법 제44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법 제146조제4항”을 “법 제14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법 제146조제4항”을 “법 제14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법 제146조제4항”을 “법 제14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법 제146조제1항제6호”를 “법 제146조제2항제3호”로 한다.

제8장제5절의 제목 중 “특정부동산”을 “소방분”으로 한다.

제20조 중 “법 제146조제4항”을 “법 제146조제5항”으로, “특정부동산”을 “소방분”으로,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2조 중 “특정부동산”을 “소방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, 제15조, 제17조, 제19조, 제20조,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1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제5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

제20조(세율)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2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제22조(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) 법 제 147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전 지역으로 한다.

제146조제2항제3호-----

-----.

제5절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

제20조(세율) 법 제146조제5항-----

-- 소방분-----
----- 제3항--
-----.

제22조(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) -----

소방분-----

-----.

관 계 법 령

□ **지방세법** [시행 2020. 1. 1.] [법률 제16855호, 2019. 12. 31., 일부개정]

제40조(과세대상)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경륜·경정법」에 따른 경륜 및 경정
2. 「한국마사회법」에 따른 경마
3.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,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제44조(장부 비치의 의무)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3.29., 2014.12.31., 2019.12.31.>

1. 발전용수: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
2. 지하수
 - 가.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: 세제곱미터당 200원
 - 나.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: 세제곱미터당 100원
 - 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: 세제곱미터당 20원
3. 지하자원: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
4. 삭제 <2019.12.31.>
5. 삭제 <2019.12.31.>
6. 삭제 <2019.12.31.>

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9.12.31.>

1. 컨테이너: 컨테이너 티이유(TEU)당 1만5천원
2. 원자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1원
3.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3원

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0.12.27., 2014.1.1., 2019.12.31.>

1.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.

과세표준	세 율
600만원 이하	10,000분의 4
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	2,400원 + 600만원 초과금액의 10,000분의 5
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	5,900원 + 1,300만원 초과금액의 10,000분의 6
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	13,700원 + 2,600만원 초과금액의 10,000분의 8

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	24,100원 + 3,900만원 초과금액의 10,000분의 10
6,400만원 초과	49,100원 + 6,400만원 초과금액의 10,000분의 12

2. 저유장, 주유소, 정유소, 유흥장,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.

2의2. 대형마트, 복합상영관(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), 백화점, 호텔,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.

3. 삭제 <2019.12.31.>

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,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,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10.12.27., 2019.12.31.>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. <개정 2011.3.29., 2019.12.31.>

[시행일 : 2021. 1. 1.] 제146조

제147조(부과·징수)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. <개정 2013.1.1., 2016.12.27., 2019.12.31.>

1.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 다만,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.

2.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(이하 이 조에서 “산출세액”이라 한다)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3.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
가. 삭제 <2013.1.1.>

나. 삭제 <2013.1.1.>

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, 제115조 및 제122조(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)를 준용한다. <개정 2010.12.27., 2018.12.31., 2019.12.31.>

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·징수한다. <신설 2018.12.31., 2019.12.31.>

- 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12.31., 2019.12.31.>
- ⑤ 삭제 <2019.12.31.>
- ⑥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8.12.31.>
- ⑦ 제6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2.31.>
- ⑧ 삭제 <2019.12.31.> **[시행일 : 2021. 1. 1.] 제147조**

부 칙 <법률 제16855호, 2019. 12. 31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89조제1항제1호, 제91조, 제93조제10항·제12항, 제1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103조의19, 제103조의21제2항, 제103조의34, 제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: 공포한 날
2. 제128조제3항·제4항, **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,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18조: 2021년 1월 1일**

제2조 (생략)

제3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4조~제16조 (생략)

제1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2항제2호”를 “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3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”를 “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”로 한다.

제443조제2항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3항”으로 한다.

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1항 중 “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”를 “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11장에 따라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”를 “「지방세법」 제142조제1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”로 한다.

③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제1호 중 “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”를 “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”로 한다.

제18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2021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(조례를 포함한다)에서 종전의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세법」의 개정(2021.1.1. 시행)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사유 1호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권오정